

근로감독관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5일, 박홍배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
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 축조심사 · 의
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
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홍배의원)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기초이며, 근로 조건의 기준은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임. 그러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간접고용 등의 확산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근로감독 제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집행 기준에 대한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이로 인해 근로감독 행정은 지역과 업종별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 특히 복잡한 고용 구조 하에서 권리구제의 시기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후퇴하는 양상임.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체불임금 등 노동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근로감독관 개인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하고, 현장 대응의 표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짐.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관법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하여 근로감독의 표준을 확립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등에 대한 체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행정 표준을 마련하여 그 업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각 조항은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 등)의 규정을 동 제정안에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내용을 상향입법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바,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은 현행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의 실제 업무수행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며, 벌칙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체계를 고려한 양벌규정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